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관리 Q&A

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

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?

- 원인미상폐렴과 이외 여행력, 다른 사람과의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

의사 환자는 선별 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?

-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
-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 또는 지역번호+120)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 진료소(의료기관 또는 보건소)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.

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?

- 의사 환자는 확진 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,
-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,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,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.
-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VII.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의사 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

○ 의사 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

-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(특이사항)란에

→ 의사 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 감염병(신종감염병증후군)으로 신고 필요

-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, 결과 양성이면 확진 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
< 의사환자 구분 >

- ▶ 의사환자①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

<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>

- ▶ 조사대상 유증상자① :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
- ▶ 조사대상 유증상자② :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
- ▶ 조사대상 유증상자③ :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

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, 환자관리 (외출 자제 권고, 이동방법안내, 보건교육 등)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?

○ 그렇습니다.

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, 대중교통 이용 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,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.

출처

질병관리본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**대응 지침서 7-3판 Q&A 게시판
(2020.03.15)**